2026-01-21 16:46:29

함양안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73호(2024.12.31.)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편입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함양안의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80번지 일원 (4,714.00m^2)	2024.12.31 ~ 2028.05.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재지	지번(분할 전)
토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80, 90, 257-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보상계획 및 보상열람 공고] 게시위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사업소개 → 토지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열람 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33.12 608C667351D1455781B1667F3675F20E 2026-01-21 16:46:29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6-01-21 16:46:29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01.27.(화)~2026.02.10.(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3층
 전화 : 055-210-8374

○ 함양안의 인구정책과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전화 : 055-960-4180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및 함양군 인구정책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4. 보상일정(예정)

- 2026. 2월 : 감정평가 실시
- 2026. 3월 : 보상금 통보 및 협의계약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33.12 608C667351D1455781B1667F3675F20E 2026-01-21 16:46:29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6-01-21 16:46:29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액 : 감정평가 실시 이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본인소유의 토지 및 물건 이외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변경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12 608C667351D1455781B1667F3675F20E 2026-01-21 16:46:29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6-01-21 16:46:29

다. 사업지구의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 055-210-8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233.12 608C667351D1455781B1667F3675F20E 2026-01-21 16:46:29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